##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

구 하천법 부칙(1971.1.19.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.12.31.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) 제2 조 제1항에 의하여, 구 하천법(1999.2.8. 법률 제58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, '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'(1986.06.12. 대통령령 제11919호) 제10조가 ' 편입 당시의 상황'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,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 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,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 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토지가 토 사 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 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으로 편입 된 경우, 보상을 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제 3자의 인위적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부칙(1971.01.19.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.12.31.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)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'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관한규정'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 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, '법률제3782호하천 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'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, 그 후 보상액을 다 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.</P> <P>(대법원 1999.09.03. 선고 98다3610.3627.3634 판결)</P>